##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1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민형배·윤준병·이재관

이상식 · 김태년 · 박홍근

소병훈 • 이정문 • 이성윤

김원이 • 황정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송 대리법무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소송 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소송은 매우 공적이고, 그 비용이세금에 기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합니다. 공적 정보공개 확대로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7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			
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		
	록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